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6 선고 2020가단29833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8 선고 2021나2521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6 선고 2020가단29833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3. 29

판결 선고 2021. 4. 26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. 9. 7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%,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, 피고는 2007. 8. 21. D에게 1억 원을,이율 월 2%, 변제기 2008. 2. 21.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다(이하 '이 사건 대여금'이라 한다).

원고는 같은 날 D를 대리하여 C,피고에게 '1억 원(월 2부 약정)'의 영수증(갑 제1호증의 1)을 작성·교부하였다.

나. D는 2007 . 8. 22.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, F호에 관하여 C,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. 9. 6.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0. 9. 14. 말소되 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1내지 3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는데,D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와 C이 원고에게 대신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4,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그런데,피고는 C과 함께 D로부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.

원고가 대위변제한 4,000만 원은 피고가 이중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갑 제2, 3, 4, 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D의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하여이중으로 변제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(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1285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

이자와 원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진수